

법 정 상속 재산 명 세 서									
상 속 인				각 상 속 분 재 산 내 용					⑩ 적 요
①성명	②주민등록번호	③주소	④관계	⑤종류	⑥소재지	⑦수 량	⑧단가	⑨가격	

※ 기재상의 주의

- ④는 피상속인과 상속인과의 관계를 기재할 것.
- ⑧,⑨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재할 것.
-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보험금, 퇴직금, 공로금등에 있어서는 지불자의 주소, 성명을 ⑤에 기재할 것
- ⑩에는 가격계산상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할 것.
- 상속재산의 상속분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된 대로 각각 상속분 재산내용란에 기재할 것.
- 상속분의 지정이 없거나 분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속인과 상속재산의 전부를 각 해당란에 열기하고 그 뜻을 적요란에 기재할 것.
- 상속재산은 각자 분할하였을 경우에는 그 분할된 대로 각각 상속분 재산내용란에 기재할 것.

[별지 제8-2호서식]<개정 1996.3.26>

[illegible]

※ 작성 방법

- ④는 증여받는 사람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.
- ⑨, ⑩에는 증여당시의 시기로 기재하며, ⑪에는 가격산출내역이나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합니다.
- 수증재산이 보험금·퇴직금·공로금등인 경우에는 지불지의 주소·성명을 ⑦에 기재합니다.

22226 - 29211 민

96.1.30 개정

이 서식은 무료로 배부합니다.

364mm × 257mm

(신문용지 54g/m²)

[별지 제8-3호서식]<개정 1993.2.26>

공 제 금 명 세 서

공 무	①종류	②발생연월일	채 권 자			⑥금 액
		. . .	③주 소	④성 명	⑤주민등록번호	
		. . .				
		. . .				
		. . .				
		. . .				
	계	. . .				원
제 금	⑦세 목		⑧연 도 별		⑨기 분 별	⑩금 액
	계					원
장 례 비	⑪ 내 역				⑫ 금 액	
	계				원	
⑬총 공 제 금 액						

※ 채무·공과금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기재할 것.

[별지 제8-4호서식]<개정 1995.4.1>

☐주택 ☐농지 등 ☐가업 상 속 공 제 액 계 산 서								
주 택	구 분	계	대 지		건 물		비 고	
	면 적	/ /						
	①가 액							
농 지 등	구 분	계	농지	초 지	산림지	영농법인 출자지분	어선(톤)	어업권
	②면 적	/ /				/ /	/ /	
	③가 액							
④가 업								
⑤물적공제 대상금액								
⑥물적공제 종합한도			1억원					
⑦물적공제 계 (⑤,⑥중 적은 금액)								
추 가 공 제 액	⑧ ⑨영농(양축, 영어) 상속인이 받는 농지등							
	⑩추가 공제 한도		1억원 (임업후계자가 산림지를 상속받는 경우는 2억원)					
	⑪공제액 (⑤-⑥,⑨,⑩중 적은금액)							
물 적 공 제 합 계 (⑦ + ⑪)								
※ 기재요령 1. ①란에는 여러개의 주택이 있을 경우 그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것을 기재하며, 상속세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있는 경우는 그 공제대상내역을 비고란에 기재합니다. 2. ②란은 종류별로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한도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한도면적을 기재하며(어업권은 해당어장의 면적을 기재), ③란을 기재함에 있어서 20톤이상의 어선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3. ④란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사업용 재산가액의 20%에 상당하는금액을 기재합니다. 4. ⑨란은 ②의 가액중 영농(양축·영어)상속인이 상속받는 농지등의 가액을 기재합니다.								